

성결대학교산학협력단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성결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주소) 이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성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산학협력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법과 본 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본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지자체 산하기관의 수탁운영 업무
9. 기타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법령과 본 대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사항 및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및 운 영

제5조 (구성)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1. 산학협력단에 1인의 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성결대학교산학협력단정관(9-1-1)

2. 산학협력단에는 본부장 또는 과장 1인을 둔다.
3. 산학협력단에 감사 1인을 둔다. 다만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의 감사(공인회계사)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4. 산학협력 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약간 명을 둔다.
5.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6. 산학협력단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에 의한다.
7.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산학협력사업이나 산학연구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지원을 위해 산학협력팀을 둔다.

제6조 (단장 및 본부장)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교직원 중에서 1인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괄한다.
-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본부장은 총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부장이 후임단장 선임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본부장이 궐위 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를 두며, 감사는 총장이 임면한다.

-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 ③ 산학협력단의 재정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에 관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부조직을 둔다.

1. 글로벌창의인재지원센터
 2. 기업애로 기술클리닉센터
 3. 정보화혁신센터
 4. 유엔인구기금 클러스터 센터(Center for the UNFPA Focus Group Cluster)
- ② 산학협력단에는 기타 필요에 따라 사업부서 및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9조 (직원의 임용 등) ① 단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과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은 대학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① 단장 및 본부장은 제8조에 규정한 사업부서 및 기구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재 산 및 회 계

제11조 (재산의 구분)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12조 (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3. 사업수익
4. 차입금 등

제13조 (회계원칙)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법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사업년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본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서류

③ 본 대학교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년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년도) 산학협력단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5조 (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7. 이자수입
8.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 (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본 대학교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10. 기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제17조 (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17조의 2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보 칙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각종 직에 있는 자 또는 근무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정관의 변경)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장은 정관의 변경사항을 관할법원에 등기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 (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시킨다.

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기도 소재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 경기일보에 공고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사업목적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기는 관할 법원에 등기한 날(2004년 3월 30일)로 한다.

② (지적재산권의 이전)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에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소속 센터 인력 인건비) 산학협력단 산하 센터 소속 자체인력의 인건비는 당해 사업의 수입금으로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15조)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5조)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결대학교산학협력단정관(9-1-1)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제22조)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8조)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제5조, 제13조)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